

행정자치부 시정요구

제 목 감사담당자 인사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강원도에서는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자([표]참조)를 감사관실로 전보 조치하여 감사담당자로 근무하게 하였다.

「공공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3호에 따르면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감사담당자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아래 [표]와 같이 ○○○는 2013. 7. 26.부터 2016. 1. 21까지 강원도 ○○○○○○○○국 ○○○에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2014. 11. 14. ‘견책’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

또한 ○○○은 2014. 1. 27. 부터 2014. 10. 23까지 강원도 ○○○○○○○○에서 근무할 당시 ○○○○○○○○등 수익계약 부적정으로 훈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.

따라서, 강원도 인사부서에서는 징계(면책)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○○○ 및 ○○○을 감사부서에 전보 조치하여서는 아니 되었다.

그런데도 강원도 인사부서에서는 감사부서에 배치할 직원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징계(문책)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인 ○○○를 2016. 1. 22. 및 ○○○을 2014. 10. 24. 감사관실로 전보 조치하여 현재까지 감사담당자로 근무하도록 하였다.

[표] 징계 및 문책대상자 감사담당자 전보 명세

관 련 자		전부서	징계(면책) 내역			전보일	비고
성명	직급		양정	비위내용	처분일		
○○○	지방○○○○○	○○○	견책	음주운전 1회	'14.11.14.	'16.01.22.	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○○○를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감사부서로 전보 발령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